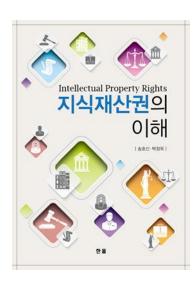
chapter 1

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?







손연우 010-2294-1125 gungye@naver.com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- 물질특허·제법특허·용도특허 등의 용어는 특허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의 출원시 '청구의 범위란'의 소항목들로 '청구항'에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<mark>내용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</mark>이다.
- 예컨대 의약품에 대한 **새로운 물질**을 발명 : **물질특허** 인정 그 의약품의 **새로운 효능**이 발견되었다면 : **용도특허** 인정 당해 의약품을 **만드는 방법**을 새롭게 개발했다면 : **제법특허** 인정 그 의약품의 효과와 복용상 간편성 개선 위해 **새로운 제형** (예컨대 액상, 캡슐, 주사 등)을 만들었다면 : **제형특허**가 인정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물질특허(product patent) : 그 <u>물질자체를 권리의 대상으로 하는 특허</u>.

→ 동일물질에 대하여는 그 제법 · 용도와 무관하게 하나의 물질특허가 인정될 뿐이다.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용도특허(use patent): 특정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만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에 인정되는 특허.

→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조방법・용도가 있는 경우 각기 별도의 제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인정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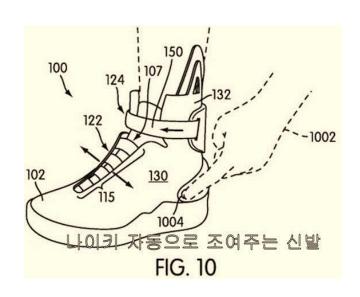
예컨대) 비아그라 → 물질특허 2012년 5월 만료 용도특허 2014년 5월 만료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제법특허(process patent) :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

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제형특허 :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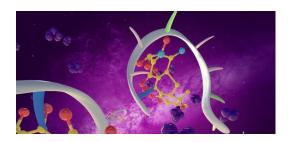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

- 제법특허 또는 용도특허만 인정되는 법제에서는
- -> 새로운 제법이나 용도를 발명하면 그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
- 물질특허도 함께 인정하는 법제에서는
- -> 그 <u>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으면</u> 제법특허나 용도특허 등의 독자적인 사용 또는 실시가 불가능 물질특허에 종속된다.
- 현재 우리는 특허법 제32조에 의하여 물질특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.





II. 지식재산권의 종류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2) 실용신안권
- 실용신안권은 "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•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"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(실용신안법 제2조. 제4조).
- → 즉 새로운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그 고안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배타적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권리이다.







실용신안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

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2) 실용신안권
- 특허와 실용신안
 - **동일점**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라는 점
 - **차이점** 그 발명의 **고도성**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
- → 실용신안을 **"작은 발명"**이라 하여

주로 상품의 형태 · 구조 · 결합에 관한 기술적 창작("고안")

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2) 실용신안권
-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"고안"은 특허권의 대상인 "발명"과 비교해 실제적으로 뚜렷한 구별이 어렵다.
 - → "실용신안권을 인정하지 말자"는 견해도 상당 현재 우리나라・일본・이탈리아 등 10여개국만 실용신안권을 인정.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3) 디자인권(industrial design)

디자인권은 상품의 형상 · 모양 ·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

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고안을 등록한 자가 그 디자인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(디자인보호법 제2조).

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3) 디자인권(industrial design)





디자인보호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디자인"이란 물품[물품의 부분,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의 형상·모양·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(美感)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 다.
- 2. "글자체"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**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** 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(숫자,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2의2. "**화상**"이란 <u>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</u>되는 **도형・기호 등**[기기(器機)의 <u>조</u> <u>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</u>하고, **화상의 부분**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3) 디자인권(industrial design)

디자인은 정신적 창조물이지만 발명이나 실용신안과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**기술적 창작이 아니고**"시각적 미감"을 느끼게 하여 상품

<mark>의 가치를 높이는 작용</mark>을 한다.





1. 전통적 유형


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- 상표권(trademark)은 "**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(식별)하기** 위해 문자·도형·기호·색체 등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"이다.
- 상표는 식별표식이라는 점에서
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인 발명과 다르다.
- 상표권은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·성능 등 우수성을 보장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작용도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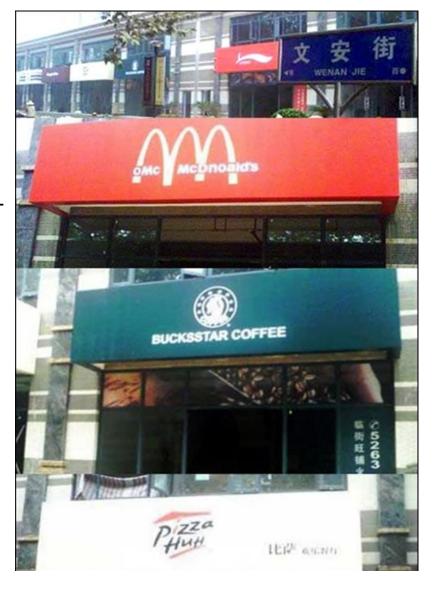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- 같은 산업재산권인 **특허권·실용신 안권**은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이 며 진보적인 **기술**을 그 대상으로 하는 데
- **상표권**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**상징**을 대상으로 한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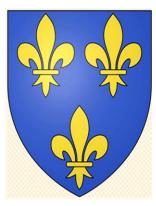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
또한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써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기도 하다.





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- 상표와 상호는 구별된다.
- **상호** : 영업상의 활동에서 **상인을 표창하는 명칭** 하나의 명칭이므로 **문자로 구성되어서 호칭될 수 있어야**
- 상호는 도형이나 기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.
 - 상호는 영업자체를 표시하는 영업표나,
 - 상품을 직접 표창하는 상표와는 다르다.
 - 상호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보호











1. 전통적 유형



(2) 저작권

- 저작권(Copyright)은 학문·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
- 저작권의 대상은 **사람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로서 논문·도서·음반·그림·사진·악보·조각물** 등이다.
-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**출판·반포·복제·공연·방송·전시** 등의 권한을 일정한 존속기간(**생존하는 동안 + 사후 70년**) 동안 독점적·배타적으로 가지게 된다. (저작권법 제39조)



II. 지식재산권의 종류

1. 전통적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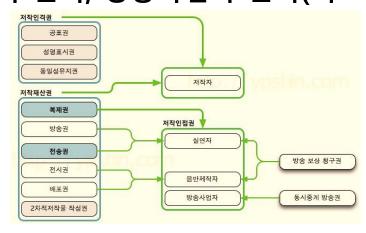




(2) 저작권

-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특징으로 한다.
- →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인 **저작인격권**이 인정되고
- 재산적 가치를 지배하는 **저작재산권**을 인정한다.
- → 저작재산권으로는 저작물의 복제권・공연권・방송권・전시권・배포권을 비롯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한다.
- 또한 저작물의 실연,음반제작,방송사업에 대하여는 **저작인접권**을 인정 저작인접권은 그 보호기간이 저작권보다 짧은 것이 보통 저작인접권으로는 실연자 권리, 음반제작자 권리, 방송사업자 권리(저

작권법 제86조)





수고 하셨습니다.